

[사 건 명] 행심 2013-1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12.9.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건외 ●●●, △△△, ▽▽▽은 피해학생 ○○○이 5월초 눈(간혈성 교대성 외사시로 2013.05.03.에 수술하여 한달 간 결석)과 귀가 약하여 고정석을 배정 받은 것, 급식 당번으로 배식할 때 청구인 외 3인에게 먹고 싶은 대로 배식해 주지 않는 것 등으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 2013.11.22. 쉬는 시간 소외 ●●● 학생과 청구인 등은 피해학생 ○○○에게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고, 지정석이 있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발로 차고 밀쳤다.

다. 2013.11.22. 오후 3시 경 담임교사와 상담하기로 했으나, 피해학생이 귀가하자 건외 ●●● 학생은 아래와 같은 협박성 문자를 피해학생 ○○○에게 보냈다.

“나는 니가 내 마지막 전화를 받으면 월요일에 적어도 폭력은 안 쓸려고 했고 넌 그 기회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가 뭔짓을 하든간에 행패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하지마라 난 안 들을 거다”
“그리고 나 내일 너 안 때림 난 월요일부터 다른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거든ㅋㅋㅋㅋ”

라. 2013.11.25. 청구인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학폭위가 열려도 별 것 아니고, 자신은 통지표에 기재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마. 2013.12. 5.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가해자	처분내용	비고
○○○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
●●●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 ▽▽▽	학교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바. 피청구인은 2013.12.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결과가 2013.12.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3.12.17.에 제기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 1) 청구인은 피해학생 ○○○의 母가 2013.11.25. ○○교육청 공개 게시판에 올린 학교폭력 관련 신고 글에서 '선생님 앞에서 책상을 뒤엎거나 책을 짓밟는 행동'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피해 학생에게 고정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말다툼 끝에 책상을 한번 발로 찬 것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 청구인에게 한

사회봉사 조치는 사례가 없는 과중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2)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해학생 母가 임신 중이니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무조건 사과하라고만' 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가해자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학교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기다렸으나 청구인과 동일한 행위를 한 가해학생(△△△, ▽▽▽ 등)들 보다 더 가중한 조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
- 3)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12.5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등기로만 받았을 뿐 사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 4) 청구인이 학폭위가 열려도 별 것 아니라 한 것은 학교로 경찰이 온다는 말에 초등학생으로서 두려운 맘에 한 말일 뿐이며, 자치위원회의에서 초등학생의 이 말 한마디로 청구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과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사회봉사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5) 피청구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고, 사전 조사에도 거론되지 않았던 1학기 학교폭력 사건을 관련지어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조사 없이 '욕설과 헐박, 감금 폭행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하며, 마치 청구인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폭력아동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처분에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 6) 피해학생이 눈수술을 하여 '약 한달 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하는 소견서는 2013.5.3.일자 작성되었고, 이 사건은 2013.11.22.일 발생한 사안이므로 정상적인 학생에게 장애 학생 운운하고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판단한 징계는 부당하다.(이상 4)항부터 6)항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보충 주장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 외 3명의 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자리로 가서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너만 왜 그 자리에 앉아?”라고 하여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폭행, 모욕,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비록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가해 행위가 1대 1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피해학생을 네 명의 학생이 둘러싸고 청구인 등이 합동하여 한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1의2호의 따돌림에 해당 하는 것으로 사회봉사 8시간의 조치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 등은 피해학생이 5월 초 눈 수술을 받고 귀까지 불편한 학생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가중하는 규정을 두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바, 피해학생은 장애 학우에 준하는 보호를 합이 옳다고 생각 된다.
- 다. 또한 사회봉사는 요양원에서 연로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하는 처분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처분이며, 청구인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별 것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법 제17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징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사유가 된다.
- 라. 학교 내에서 마무리 지을 것을 권유한 것은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사법절차로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학교 내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 마. 학교폭력 전담기구조사가 있던 2013.11.27. 5학년 교실에 계셨던 네 분의 학부모님께 직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날짜를 말씀드린바 유선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날짜를 공지해 드렸기에 절차상의 문제없다.

- 바. 청구인이 학폭위가 열려도 별 것 아니라고 한 것으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처분이 가볍게 내려지지 않기를 원했으나,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으로 피해학생 측에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을 취소하는 등 피청구인은 분쟁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사. 또한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의 처리를 위해 바로 사안조사를 했고, 가·피해 학생들을 따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피해학생의 말에 의해 피해학생 부모가 원하는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처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아. 피해학생을 장애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애 학우에 준하는 보호를 함이 옳다고 한 것이고, 청구인 외 3명의 학생은 피해학생이 불편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상을 발로 차고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여 청구인 등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타당하고 적절한 처분을 한 것이다.
- 자. 청구인은 1학기에도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여 반성문을 쓰고 학교에서 중재하여 2013.07.25. 학교에서 청구인의 母가 피해학생 母에게 직접 사과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마무리 지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 한 것이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4명에게 차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상, ‘바’항부터 ‘자’항은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따른 피청구인의 주장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18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1) 청구인과, 건외 ○○○, △△△, ▽▽▽은 피해학생 ○○○이 5월초 눈 (간혈성 교대성 외사시로 2013.05.03.에 수술하여 한달 간 결석)과 귀가 약하여 고정석을 배정 받은 것, 급식 당번으로 배식할 때 청구인 외 3인 에게 먹고 싶은 대로 배식해 주지 않는 것 등으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11.22. 쉬는 시간 소외 ○○○ 학생과 청구인 등은 피해 학생 ○○○에게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고, 지정석이 있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발로 차고 밀친 사실이 있는 점,
- 2) 2013.11.25. 청구인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학폭위가 열려도 별 것 아니고, 자신은 통지표에 기재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은 나이 어린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로 경찰이 온다는 말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 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는 경찰조사가 시작하기 전으로서 시기적으로도 청구인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 3) 청구인은 2013년도 1학기에도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당시 피해학생

에게 평소의 불만을 얘기하고 책상을 발로 1회 걷어차며 밀친 사실 밖에는 없지만, ① 피해학생에게 1학기 때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하여 사과를 한 적이 있었던 점, ② 2013.11.25. 청구인이 교실에서 선생님께 학폭위가 열려도 별 것 아니고, 자신은 통지표에 기재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을 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